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지표를 경영지침·경영평가에 반영〉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2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지표를 경영지침·경영평가에 반영 (안 제48조 및 제50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21.

다. 회 부 일 : 2024.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 운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경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인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50조 등).

Ⅲ. 검토의견

1.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지표를 경영지침·경영평가에 반영 (안 제48조 및 제50조)

현 행	개 정 안
○ 경영실적 평가기준 반영사항 -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 <신 설> -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 경영지침 규정사항 -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 <신 설> - 그 밖에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경영실적 평가기준 반영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 (현행과 같음) ○ 경영지침 규정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무건정성 확보 및 환경적 건정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한 사항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기업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RE100 캠페인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음.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란 전력 다소비 기업(100GWh/년)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으로서, 2024년 현재 433개 세계적 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음.¹⁾

국내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2024년 7월 기준 삼성, 현대, LG 등 36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의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발간한 “국제 전력 리뷰 2023(Global Electricity Review 2023)”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로 세계 평균(30.4%)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정부는 2020년에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RE100 캠페인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²⁾,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성과는 보고된 것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총 전력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³⁾ 사용 실적과 사

1) 캠페인 참여는 2014년부터 The Climate Group과 함께 RE100 캠페인을 주도한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하여 이루어지며, The Climate Group에 따르면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 수는 2014년 12월 12곳에서 2024년 7월말 기준 433개로 10년간 36배 증가하였음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2020.9.3..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3호), 재생에너지의 사용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도록 하며(안 제48조제7항),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증대를 통해 환경적 건전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에 선도적인 역할(안 제50조제1항제4호)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 제50조제1항은 경영지침에 규정할 사항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일상적 사항’으로 명문화⁴⁾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바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 예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현행법 제48조는 경영실적 평가의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 5. (생략)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기본원칙 및 일반사항(경영목표, 재무운용, 인사·고용, 고객만족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세부평가 지표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재생에너지 사용목표 및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 및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사항으로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 등이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관련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⁶⁾ 및 별표 2⁷⁾는 해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생략)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당 건축물에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비율을 2020년 30%부터 2030년 40%까지 순차적으로 상향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신정훈 의원안(의안번호 2104186)이 제출되어 경제재정소위⁸⁾에서 논의되었는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지표를 경영지침이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

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③ (생략)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연도	2020~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2028~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8) 제38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1. 6. 24)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생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⑥----- -----제9항----- -----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결격사유)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 -----제9항-----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7. (생략) ⑥ (생략) <u><신설></u> ⑦ ~ ⑩ (생략) 제50조(경영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u>확보</u>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제50조에서 “재생에너지”라 한다) 사용 실적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제5항제7호의 사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50조(경영지침)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u> 4. ----- -----<u>확보 및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u>-----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48